

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7일
신청인	성명 (상호명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:)		
선박	선명		선박번호	
	선적항		총톤수	
	IMO 번호			
<p>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7조제3항 및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</p> <p>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</p> <p>선급법인의 장 귀하</p>				
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아래의 사항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</p>				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	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사항 (확인에 동의하지 아닐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)	수수료
	1.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.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선급법인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		선박검사증서(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3,000원

210mm × 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